

부속시설 사용세칙

제 정	2006. 10. 30
개 정	2007. 12. 26
개 정	2008. 03. 25
개 정	2009. 01. 30
개 정	2010. 12. 29
개 정	2011. 11. 04
개 정	2014. 07. 11
개 정	2015. 02. 02
개 정	2016. 07. 13
개 정	2018. 08. 06
개 정	2023. 09. 19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대관규정 제2조제1항1호에서 정한 부속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의 사용에 대하여 대관규정 제16조에 의거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사무동의 부속시설 중 가칭 대회의실은 “컨퍼런스홀”, 가칭 소회의실은 “뮤즈홀”이라 한다.

제3조(사용범위) 사용자가 임차 사용가능한 시설 및 장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 : 컨퍼런스홀, 뮤즈홀
2. 부대장비 : 각 시설 내에 설치된 영상 및 음향 장비

제4조(사용시간) ① 부속시설에 관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09:00부터 13:00까지(4시간)
2. 14:00부터 18:00까지(4시간)
3. 18:00부터 21:00까지(3시간)
4. 09:00부터 18:00까지(전일) <신설 2007.12.26.>
5. 사용료는 회당(4시간기준) <신설 2007.12.26.>

② 위 항에서 규정한 각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제5조(사용신청 등) ① 시설을 사용·변경·취소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신청은 사용예정일 10일 이전에 하여야 하며, 사용일정 변경 및 취소는 사용예정일 7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희망일시의 사용가능 또는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사용승인 및 계약체결) ① 시설의 사용승인은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개정 2010.12.29.>

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재단과 “별지 제2호 서식”의 부속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7조(사용신청의 제한, 사용승인의 취소 및 신청 자격정지)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신청을 제한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치·특정종교행사 또는 특정제품의 직접 판매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16.07.13.>
3. 재단의 명예 또는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3항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중인 자의 신청
5. 삭제<2018.8.6.>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단은 사용승인을 취소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신청기재 내용과 다르게 사용될 경우
2. 이 세칙이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용권을 재단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용계약자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그 행위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하의 사용 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0.12.29.>

1. 위 2항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이 세칙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3. 이 세칙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제8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매년 시설유지 및 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정한다.

②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와 부대장비 사용료로 구성되며,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7일안에 사용료의 20%를 계약금으로 선납하고, 잔금 80%는 회의실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6., 2015.2.2., 2018.8.6.>

③ 사용자가 계약체결 후 사용 예정일 30일이전 까지 사용 신청을 서면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반환, 7일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5.2.2., 2018.8.6.>

④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적용하여 산출한다. <신설 2015.2.2.>



제9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① 대표이사는 성남시 또는 재단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사용료의 전부, 협찬하는 행사의 경우 50%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②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2. 국가적 행사, 성남시 또는 재단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3. 삭제 <2007.12.26.>
4. 기타 대표이사가 반환을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0.12.29.>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재단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 승인된 시설 및 장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재단에 시설되어 있지 않은 외부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쓰레기가 발생할 경우 성남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거 쓰레기 폐기를 위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상기 각항의 내용을 위반하여 재단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제11조(손해배상) ① 재단은 제7조에 근거하여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사용자의 사용부주의로 인한 시설 및 장비 등의 훼손 또는 사용 내용에 의한 재단의 명예훼손 등으로 재단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이 세칙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세칙 외 사항) 이 세칙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세칙의 해석에 관하여는 재단의 관련규정과 관계 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13조(관할법원) 이 세칙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쌍방합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11월 1일에 시행한다. <제정 2006.10.30.>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사용 승인된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1.11.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7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2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7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8월 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9월 19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개정 2008.3.25., 2010.12.29., 2011.11.4., 2014.7.11., 2015.2.2.>

기본시설 및 부대장비사용료

(제8조 관련)

□ 기본시설 사용료

구 분	면 적	사용료 / 회(V.A.T.포함)		비 고
		평 일	휴 일	
컨퍼런스홀	198.348㎡(60평)	217,800원	283,800원	■ 휴일은 성남문화재단 취업규정 제22조 제1항에 명기된 날을 말한다. (토·일요일, 국경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뮤즈홀	85.951㎡(26평)	95,700원	124,300원	

□ 부대장비 사용료

장 비 명	사용료/회(V.A.T.포함)	장 비 명	사용료/회(V.A.T.포함)
대기실(탕비실)	무 료	전동바텐	무 료
빔 프로젝터	55,000원	노트북 컴퓨터	33,000원
음향 장비	무 료	녹음료(120분)	5,500원
■ 기본제공 : 화이트보드, 유선마이크(2개), 강연대 ■ LAN 사용 시 컴퓨터 사용자가 준비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0.12.29., 2015.2.2., 2023.9.19.>

부속시설 사용(변경·철회)허가 신청서

접수 번호	일 자	200 . .	결 재 (심 사)	담당자	부장	본부장	대표이사																
	번 호																						
심 사 결 과		승 인 , 불 가	비 고																				
단 체 명 (사 용 자)					전화번호		FAX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장 소		컨퍼런스홀 ☐ 뮤즈홀 ☐			E-mai	@																	
추가사용장비		① 빔프로젝트(유료) ☐ ② PDP TV(유료) ☐ ③ 녹음(유료) ☐ ④ 전동바텐 ☐																					
행 사 명						참가인원	명																
내 용 (행사변경·취소)																							
사 용 일 시		20 . . ~ 20 . . ① 09:00~13:00 ② 14:00~18:00 ③ 18:00~21:00 ④ : ~ :																					
사 용 료		원(부가세포함)			납 부 일 자																		
위와 같이 성남문화재단 부속시설 사용(변경·철회)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귀하																							
접 수 증 <table border="1"> <tr> <td>접 수 번 호</td> <td></td> <td>접 수 일 자</td> <td></td> </tr> <tr> <td>승 인 번 호</td> <td></td> <td>승 인 일 자</td> <td></td> </tr> <tr> <td>행사명(내 용)</td> <td></td> <td>사 용 일 시</td> <td></td> </tr> <tr> <td colspan="4">승 인 조 건</td> </tr> </table>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승 인 번 호		승 인 일 자		행사명(내 용)		사 용 일 시		승 인 조 건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승 인 번 호		승 인 일 자																					
행사명(내 용)		사 용 일 시																					
승 인 조 건																							
담당자					전화번호		FAX																
년 월 일 재단법인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7.12.26., 2010.12.29., 2015.2.2.>

부속시설 사용계약서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이하“갑”이라 한다)과 사용자(이하“을”이라 한다)는 성남문화재단 부속시설 사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쌍방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 행 사 명 :

2. 신청자(단체) :

3. 계약사항

가. 사용목적 :

나. 사용일시 :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일, 회)

① 09:00~13:00 ② 14:00~18:00 ③ 18:00~21:00 ④ : ~ :

다. 사 용 료(V.A.T포함) 금 원정 (₩)

◦ 기본시설사용료 금 원정 (₩)

◦ 부대시설사용료 금 원정 (₩)

4. 사용료의 납부

“을”은 “갑”에게 계약체결 후 사용료 금 원정(₩ ,부과세포함)을 계약체결 3일내에 사용료의 50%를 계약금으로 선납하고, 잔금50%는 회의실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해당 계좌로 납부한다.

5. 사용자 준수사항

가. “을”은 성남시 문화재단 부속시설 사용세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칙위반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재단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을”이 납부한 사용료는 성남문화재단 부속시설 사용세칙 제9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 “을”의 사용부주의로 인한 시설 및 장비 등의 훼손으로 재단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라. “을”이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당초 사용 승인된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갑”은 사용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마. “을”이 계약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 납부 전까지 변경,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이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관련 세칙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20 년 월 일

(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을) 주 소 :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단체명 :

대표이사

(인)

대 표 :

(인)

